

의안번호	2200093
의 퇴 인	임이자의원
회 답 일	2024. 8. 13.
추 계 번 호	24B0438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3억 2,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91억 1,100만원(연평균 38억 2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후위기의 감시·예측 등 (안 제37조)	5,326	5,737	4,324	3,724	—	19,111	3,822

자료: 국립환경과학원, 「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(ISP) 수립」, 2024.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1의2. “기후위기 적응정보”란 기후변화가 생태계, 생물다양성, 대기, 물환경, 보건, 농업·식품, 산림, 해양·수산, 산업,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, 위험 및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·평가하고,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·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·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함	의무규정
2	안 제37조(기후위기의 감시·예측 등)	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·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산업계·연구계·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제3항 신설)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,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조사·연구, 기술개발, 전문기관 지원,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조(정의)	—	• 미대상 －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2	안 제37조(기후위기의 감시·예측 등)	○	• 환경부 제출자료 참고 －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비용
		×	• 미첨부 －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위한 조사·연구, 기술개발, 전문기관 지원, 국내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동 개정안은 기 추진 중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, 이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을 고려하여 본 추계서의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‘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’을 구축·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 환경부가 시행한 기후위기적응정보종합플랫폼 구축 관련 정보화전략계획(ISP)을 토대로 산출하며, 연도별 재원 배분 계획도 이에 근거하여 작성

※ 기후위기적응정보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(ISP)

- (시행주체) 국립환경과학원
- (기간) 2023.9.8.~2024.2.5.
- (예산) 1억 1,500만원
- (사업내용) 적응정보 당사자 및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, 적응정보 관련 조직 및 현행업무·관련 시스템 등 현황 파악 및 분석, 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 비전 및 목표모델 수립,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
- (결과) 기후위기적응정보종합플랫폼 구축 사업비('25~'28): 191억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3억 2,6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91억 1,100만원(연평균 38억 2,200만원)으로 추계됨
 - 본 추계서는 「기후위기적응정보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 계획(ISP) 수립」에 따른 전체 추진 비용(191억원)에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(1년)¹⁾을 거쳐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음

[표 2] 기후위기의 감시·예측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후위기의 감시·예측 등 (안 제37조)	5,326	5,737	4,324	3,724	—	19,111	3,822

자료: 국립환경과학원, 「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」, 2024.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 2024.5.에 따르면 S/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

Ⅲ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본 추계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운영비 등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 직무대리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박인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